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담당업무 (1개 분야, 총 2명)

가. 채용예정분야

지원코드	채용 분야	채용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01	고용	2명	부산동부고용센터(부산광역시 수영구)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인턴01	고용	○ 다양한 국정경험 기회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 정책 전반과 관련하여 공동업무, 현장활동 지원 등 업무 수행 ○ 실업급여 교육 및 실업급여 업무지원, 취업지원 등 고용센터 업무지원 * 수행직무는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① 공고 최종일 기준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이상~34세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② (학력, 전공, 성별) 무관

③ 아래 응시 제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하려는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참여횟수(2회)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 ※ 단, '23~'24년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회 더 참여기회 부여
 - ※ 참여횟수 확인을 위해 기존 참여 이력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허위 작성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인 경우
-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채용결격사유

고용노동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지침 제25조(채용결격사유)

-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가점)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채용 시 가점제 운영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관련 증명서 제출하고, 허위 기재 시 합격 취소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 또는 10%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단, 4명 미만 채용 시 법정가점은 적용하지 않으나 면접전형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 처리 시 법정가점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우선 순위로 선발하므로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시 응시원서에 해당 여부 기재 및 증명서 제출 필요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 서류전형 기준 : 인턴지원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8. 20.(목) 예정
 -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busandongbu>), 청년인재DB(www.2030db.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정책제안서 주제는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2026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 및 부산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내 ‘센터에서 하는일’ 등 참고하여 작성)

* 정책제안서는 별도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음

다. 동점자 처리 기준 및 합격자 선정 방식

- (서류전형) 서류심사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를 선발하여 면접심사 대상으로 함
- (면접전형) 최종합격자는 면접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 ① 법정 가점 대상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② 사회형평 가점을 받은 자
 - ③ 서류·면접전형 합산점수가 높은 자

4. 시험 일정

가. 시험공고: 2026. 8. 5.(수)

나. 원서접수: 2026. 8. 12.(수) 9:00 ~ 8. 14.(금) 18:00까지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2026. 8. 20.(목)

라. 서류전형 합격자 정책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 2026. 8. 20.(목) ~ 8. 21.(금) 18:00

마. 면접시험일: 2026. 8. 25.(화)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바. 최종 합격자 발표일: 2026. 8. 27.(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홈페이지, 청년인재DB(www.2030db.go.kr), 나라일터(www.gojob.go.kr)에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8. 12.(수) 9:00 ~ 2026. 8. 14.(금) 18:00
- 접수방법 : 청년인재DB 내 '청년인턴 채용' 공고에 신청
- * 신청 전 청년인재DB(www.2030db.go.kr)에 가입 필요

나. 제출 서류

- 응시원서, 청년인턴 지원서 각 1부(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동의서 1부(필수 제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필수 제출)
- 정책제안서 1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정책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에 필수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서류>

정책제안서와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 정책제안서(필수 제출)
-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필수 제출)
- 법정가점 및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근무조건

- 가.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나. (계약기간) 2026. 9. 1. ~ 2026. 12. 31.
- 다. (보 수) 월 2,156,880원(정액급식비 160,000원 포함)
- 라.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7. 유의 사항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051-559-665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1. 지원 분야					
응시번호		지원코드	인턴01	채용분야	고용
2. 인 적 사 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도로명)	(우)				
휴대전화		이메일			
3. 가산요건					
※ 아래의 내용중 해당사항에 ☒ 표기 하십시오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 해당자 ☐ 수급자 해당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 해당자					
4.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중앙행정기관명	실제 근무지	근무기간		합산 기간	
예 : 산림청	국립수목원	2025.3.4.~2025.8.31		6개월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1. 「응시번호」 란은 응시자가 기재하면 안 됩니다.
2. 가산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① 응시코드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예) 지원코드 : 인턴01 채용분야 : 행정·법무
- ③ 성명, 생년월일: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⑥ 가산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해당란에 ✓ 표시
* 단, 4명 미만 채용 시 법정가점은 적용하지 않으나 면접전형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 처리 시 법정가점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우선 순위로 선발하므로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시 응시원서에 해당 여부 기재 및 증명서 제출 필요
- ⑦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 '23년부터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참여 기간은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상 취득일~상실일 기준으로 산정)

청년인턴 지원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인턴01	채용분야	고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 해당 기관 및 직무에 지원하게 된 계기
- 향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 인턴 경험이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서술

◎ 직무 관련 전문성 획득을 위한 활동 내용

- 지원한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활동 및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 출신학교, 자격증, 시험(어학 등) 성적 등은 언급하지 말고 행동과 경험 중심으로 작성

◎ 문제 해결 경험

- 일상생활, 학교, 아르바이트, 동아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했던 경험 서술
-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중심으로 서술

◎ 소통 및 협업 능력

- 타인과 협력하여 성과를 낸 경험 서술

◎ 기대하는 점 및 각오

- 인턴ships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과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서술

○ 청년인턴 지원서 작성요령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작성 금지
- 학력, 자격증, 시험성적 등 작성 금지
- 작성 금지사항을 기입할 경우 탈락 등 불이익 조치 가능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참고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방법

-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로그인]

2024년(귀속) 수정·경정분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 안내

| 대상 사업장 | 2024년도(귀속) 국세청 근로소득 수정·경정 사업장

| 이의신청서 제출기한 | 2026년 7월 24일(금)

※ 상이내역이 맞을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불필요

자세히 보기

로그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로그인

원격지원

이용안내

산재넷

↑ TOP

자주 찾는 서비스

펼쳐보기

신청

조회

신청

신청

신청

신청

부과고지사업장 정산 대상자 이의신청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보험료 신고서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 2 개인 → 일반근로자 선택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로그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로그인]

- 로그인
- 인증서안내
- 인증서등록 및 변경
-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활용동의

로그인

[<] [화면] [도움말]

로그인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 ☒ **안내**
-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 정보보호를 위해 **자동 로그아웃(1시간30분)**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용하시려면 **[로그인 연장]** 기능(최대 10시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서비스(인원장)**는 근로자 로그인만 지원하며, **마이페이지(인원접수조회, 보험가입조회, 산재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서비스는 PC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공동인증서가 여러 개일 경우 모두 이용 가능하니 관리에 주의해주시고, **특정 인증서만 사용하려면 [공동인증서 등록]** 기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 ☒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권장합니다.

정부 통합로그인 ☒ 미사용 아직 정부 통합인증(Any-ID) 사용자가 아니신가요? 사용자 등록 > 정부 통합인증(Any-ID) 사용자 관리 >

개인

사업자

개인

유형	구분
사업장	☐ 대표자 ☐ 대리인 ☐ 중소기업 가족증서자
사무대행	☐ 대표자/소속직원
의료기관	☐ 대표자 ☐ 대리인
개인	☐ 근로자(일반, 산재, 노무제공자, 예술인) ☐ 대리인(간이대지급금/심사청구/구상금협의조정/최초요양급여신청) ☐ 산재근로자 유족

주민등록번호 -

☐ 개인정보 이용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

[개인] 간편인증서 >

네이버, 카카오, 금융기관 등의 전자서명으로 로그인

[개인] 공동인증서 >

개인 컴퓨터, USB 등에 보관되어 있는 인증서로 로그인

③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마이페이지 로그인아웃 로그인연장

민원접수/신고 정보조회 전자통지 증명원 신청/발급 업무상질병판정 심사청구

통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를 위한 재할스포츠 안내

대상: 재해일로부터 요양중인 만료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내인 통원요양자

지원내용

일반 재할스포츠	30만원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맨스스포츠,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스크라폴드-아구, 실내양궁
특수 재할스포츠	60만원	수중재할, 척추재할, 재활운동

※ 귀 병원 통원 요양중인 재할스포츠 대상 산재근로자에게 제도 안내요청드립니다.

마이페이지

매뉴얼 검색 사이트맵 원력지원 이용안내 산재넷 TOP

자주 찾는 서비스

개인

조회 사업장 피보험자격신 고현황

발급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 개인별 부과고지보험 료 조회

신청 휴업급여 청구

조회 산재환자 정보조회

신청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대령요청

④ 보험구분 중 '고용' 선택 → 조회구분 중 '상용' 선택 → 조회

증명원 신청/발급

- 증명원 진위여부 확인방법
- 보험급여지급확인원(40103)
- 보험급여원부 출력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대지급금 지급증명원(근로자용)
- 연금증서 출력

증명원 신청/발급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마이메뉴 추가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본 자료는 고용·산재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고용·산재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보험구분 ☐ 산재 ☒ 고용

· 조회구분 ☒ 상용 ☐ 일용

조회

> 이력내역서 발급

직종포함여부	☒ 예 ☐ 아니요
--------	--

① 내역서 발급을 위해서는 위의 [자격관리 상세이력]에서 해당 이력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개별사업장)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개별사업장 이력 인쇄

[신청](#)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

[신청](#)

고용/산재보험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선택 사업장에 대한 이력 인쇄

[신청](#)

- 15 -

참고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예시

☐ 산재보험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피보험자용)					
발급번호	0000-2025-01	55	발급일자	2025년 01월 03일	접수번호 0000-2025-7 J
신청인	성명	박		생년월일	년 10월 30일
조회기간	전체 (조회기간 총 2개 이력 중 2개 이력 선택 발급 요청)				
일련번호	직종명(코드)	사업장 명칭	취득일/전근일	상실일	비고
1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025)	국무조정실	2024-09-02		근로자
2					근로자
※ 본 자료는 산재보험·고용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피보험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산재보험, 고용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증명원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없이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과 금융기관 및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장구 설치 장소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 발급 증명원의 진위여부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국민소통-민원/조회-증명원 진위확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자격내역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1월 03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정책제안서

지원분야		성명		연락처		e-mail	
------	--	----	--	-----	--	--------	--

제 목	ex) 청년이 보는 실업급여 정책 ※ 실업급여 정책 뿐만 아니라 고용분야 등 고용노동부 정책사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작성
제안 배경 및 문제점(현황)	
개선안 또는 정책대안	
예상 효과	

○ 정책제안서 작성요령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
 - *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 의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 * 정책자료: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2026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및 부산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내 센터에서 하는일 등 참고
-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귀하

붙임4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면접대상자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에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필요 시 절차 종료 후 제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00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